

한·터키 FTA

100%  
한·터키 FTA 활용하기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 I. 한-터키 FTA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_4

1. 터키에서 섬유 및 의류제품에 부과하던 20~30% 추가관세(ACD : Additional Customs Duty)가 철폐되었습니다.
2. 커피, 면류 등 對터키 주력수출 농수산물도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어요
3. 협정발효일에 운송중인 물품 등은 '14. 4. 30일까지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제3국에서 전시물품이 거래된 경우도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5. 과자류는 한-EU FTA에 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6. 1,000달러 이하의 소포와 여행자휴대품 반입시 원산지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7. 면사 등 수출입물품은 선착순으로 일정수량까지 완화된 원산지기준이 적용됩니다.
8. 선착순 수입물품의 잔여수량은 FTA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9. 한-터키 FTA는 2014년부터 1월1일 기준으로 협정 세율이 조정됩니다.

## II. 한-터키 FTA 일반사항을 알아 볼까요? \_13

1. 한-터키 FTA 개요
2. 한-터키 FTA는 한-EU FTA와 유사합니다.
3. 한-터키 FTA 수출 유망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CONTENTS

---

## III. 한-터키 FTA 100% 활용하기 \_16

1. 한-터키 FTA 원산지신고서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2. 한-터키 FTA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3. 원산지신고서 제출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4.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5. 특혜 원산지 기준 중 부가가치 기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6. 원산지결정기준 이외에도 직접운송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7. 미소기준이 규정되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8.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의 원산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 IV. 한-터키 FTA의 원산지 검증에 대해 알아보시다. \_26

1. 특혜관세 진위 여부를 위한 검증방식은 무엇인가요?
2. 원칙적으로 간접검증방식이라 하였는데, 다른 방식은 없나요?
3. 수입국 관세당국은 검증요청 없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나요?
4. EU(터키) 세관의 원산지 검증 주요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 V. 알아두면 좋은 자료 \_31

- FTA 관련 문의처
- FTA 정보제공 사이트





# I 한-터키 FTA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1. 터키에서 섬유 및 의류제품에 부과하던 20~30% 추가관세(ACD : Additional Customs Duty)가 철폐 되었습니다.



☞ Additional customs duties imposed by the Decree numbered 2011/2203 and dated 12/9/2011 shall not be applied for the products origin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터키 정부)

### 설명

- 섬유제품의 터키측 관세(0~12%)는 발효 5년이내에 철폐되므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 인도 제품과 경쟁에서 유리
- 또한 발효이후('13. 5. 1)부터는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추가관세(일종의 산업보호관세)를 부과할 수 없음

## 2. 커피, 면류 등 주력수출 농수산물도 관세가 즉시 철폐 되었어요.



### 설명

- 인스턴트 커피(9.0%) 및 면류(6.4+40.27/EUR/100kg)는 즉시 철폐되었고, 고등어(53.0%), 청어(53.0%)는 각 5년, 10년 균등 철폐

### [ 우리나라 농수산물 양허제외 주요 품목(수입) ]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

현행관세 유지

쇠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고등어류, 오징어(냉동/건조) 등

### 3. 협정발효일에 운송중인 물품 등은 '14. 4. 30일까지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설명

- 협정발효일에 운송중에 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통관되지 않은 물품의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효일로부터 12개월\*
  - \* FTA관세특례법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까지 신청해야 함
-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 수입통관 가능
  - \* 직접운송 입증서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 ※ (예시) 보세구역반입일 '13. 4. 20일, 협정발효일 '13. 5. 1일  
수입신고수리일 '13. 5. 20일인 경우에도
  - ☞ '14. 4. 30일까지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을 하고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음

#### 4. 제3국에서 전시물품이 거래된 경우도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 설명

- 제3국에서 전시하고 수입·판매된 원산지 제품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세당국에 입증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가능

- ① 수출자가 그 제품을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국가로 운송하고, 그 제품을 그 국가에서 전시한 사실
- ② 수출자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제품을 판매 또는 달리 처분한 사실
- ③ 제품이 전시회 기간 중 또는 전시회 직후에 전시를 위하여 발송된 상태로 운송된 사실, 그리고
- ④ 제품이 전시를 위하여 운송된 후 전시회에서 전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

※ 원산지신고서에 전시회의 명칭 및 주소가 표기되고 필요한 경우 세관에 서 제품이 전시되었던 상태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 요구 가능

## 5. 과자류는 한-EU FTA에 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설명

- 설탕과자 등에 대해 한-EU FTA는 2개 조건(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한-터키 FTA는 1개 조건만 충족해도 가능

### [ 한-EU FTA보다 완화된 원산지기준 적용품목 ]

품목	HS	한-EU	한-터키
설탕과자	1704	모든 호(그 제품의 호 제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된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의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 미초과	모든 호(그 제품의 호 제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된 것
초콜릿 함유 식료품	1806	모든 호(그 제품의 호 제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된 것. 다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의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 미초과	모든 호(그 제품의 호 제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된 것
기타 비스킷	1905.90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된 것. 다만, 제11류의 것은 제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된 것

6. 1,000달러 이하의 소포와 여행자휴대품 반입시 원산지 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설 명

- EU와 동일하게 사적인 용도의 소포물품과 여행자 개인수화물이 아래의 금액 이하인 경우 원산지신고서 제출 면제
  - (터키수입시) 소포 500유로, 여행자 개인수화물 1,200 유로
  - (한국수입시) 미화 1,000달러
- \* 송품장·구매영수증 등 표시금액 기준, 미화이외는 과세환율로 환산금액 적용
- ☞ (참고) 한-터키 FTA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작성 가능

## 7. 면사 등 수출입물품은 선착순으로 일정수량까지 원화된 원산지기준이 적용됩니다.



### 설명

- 원산지의정서 부속가 2-가에서 정하는 선착순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원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 원산지 신고서에 아래문구를 추가하여 작성해야 함
  - (문구) Derogation - 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 [ 선착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기준 적용품목 ]

HS	상품명	원산지결정기준	
		선착순 200톤이내(완화)	200톤초과시
5205	면세면 85%이상으로 재봉사와 소매용 제외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기타 방적 준비 처리한 것 제외)로부터 생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 ①생사·견웨이스트(카드·코움·방적 준비 처리 한 것에 한함) ②천연섬유(카드·코움·방적준비 처리한 것 제외) ③화학재료·방직용펄프 ④제지원료
5510	재생·반합성스테이플 섬유사 (재봉사·소매용 제외)		"기재생략"
5408	인조필라멘트사의 직물	인조필라멘트사로부터 생산 또는 최소한 2개이상의 준비·마무리 공정이 동반 되는 염색작업 다만, 염색전 사용된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이하하여야 함	"기재생략"

☞ 당초 2단계 공정을 수행하여야 하나 선착순 200톤까지는 1단계 공정만 수행하면 원산지 기준 충족

## 8. 선착순 수입물품의 잔여수량은 FTA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설명

- 선착순 수입물품의 적용대상 및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보세구역장치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운영됨
  - (통관절차)
    - 한도수량에 도달하는 날 전날까지는 선착순 수입신고물품에 적용
    - 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 신고수리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
    - 배분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을시 한도수량도달일 다음날 순서대로 배분
  - (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통관지 세관장이 배분 ·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 → 수입자는 세액보정(가산이자)는 없음

## 9. 한-터키 FTA는 2014년부터 1월1일 기준으로 협정 세율이 조정됩니다.



### 설명

- 한-터키 FTA는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는 한-EU FTA와 다르게 발효일과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협정세율 적용
  - 한-EU FTA('11.7.1일 발효) 2년차 협정세율은 '12.7.1일부터 적용
  - 한-터키 FTA('13.5.1일 발효) 2년차 협정세율은 '14.1.1일부터 적용





# II

## 한-터키 FTA 일반사항을 알아 볼까요?

### 1. 한-터키 FTA 개요

○ 한-터키 FTA는 2010년부터 협상이 시작돼 '12.3월 협상타결 후 '12.8월 서명되었으며, 2013년 5월 1일 발효

☞ 한·터키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9번째 FTA로 터키는 우리나라가 46번째로 FTA를 체결한 국가

※ 우리가 기체결한 FTA(8개,45개국)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4개국), 한·ASEAN(10개국), 한·인도, 한·미, 한·EU(27개국), 한·페루

○ (구성) 한·터키 FTA는 △ 기본협정 △ 상품무역협정 △ 기타 협정(서비스·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및 상품무역협정 우선 발효  
- 서비스·투자 협상은 상품협정 발효후('13.5.1) 1년내 타결기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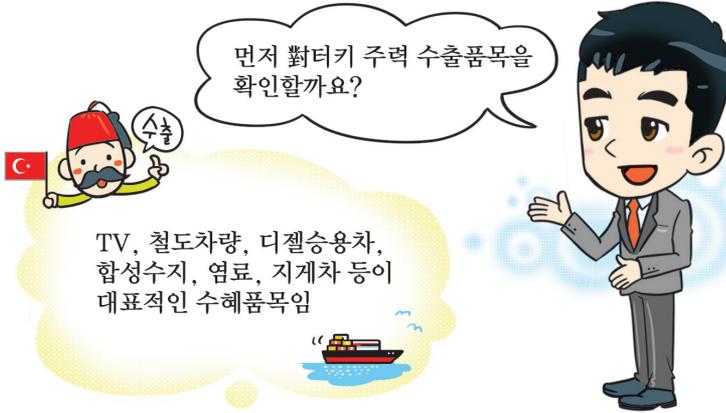
### 2. 한-터키 FTA는 한-EU FTA와 유사합니다.

\* EU-터키 관세동맹협정에 따라 터키는 한-EU FTA와 동일한 원산지기준 등 도입

상품양허	· 10년 관세철폐 : (수입액 기준) 아국 99.6%, 터키 100% (품목수 기준) 아국 92.2%, 터키 89.8%
원산지결정	· (원칙) 한-EU FTA와 동일한 기준 · (예외) 면사 등(3개)은 예외 쿼타, 설탕과자 등(3개)은 완화된 기준
원산지증명	· 수출자 자율증명(한-EU와 달리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가능)
원산지검증	· 간접검증 원칙. 다만, 검증시 수입국 관세공무원 입회 가능
관세환급	· 관세환급제도 유지(한-EU FTA,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도입)

### 3. 한-터키 FTA 수출유망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공산품의 경우 양측 모두 전 품목 7년내 관세 철폐로 매년 약 1~2%의 관세감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 [ 한-터키 FTA 수혜 주력 품목 ]

품명	HS(터키)	관세율 (%)	철폐	품명	HS(터키)	관세율 (%)	철폐
컬러TV	8528722000	14	7년	디젤승용차	87033110	10	7년
철도차량	8603100000	1.7	즉시	플라스틱제품	3920431000	6.5	즉시
디젤승용차	87033219	10	5~7년	자동차부품	87082910	3.5	즉시~7년
석유제품	2710194300	3.5	즉시	합성수지	3901209000	6.5	즉시
TV부분품	8529909200	5.0	즉시	염료	3204160000	6.5	즉시
합성수지	3903300000	6.5	즉시	지게차	8427201900	4.5	7년
철강판	72104900	15	7년	기어박스	8708402000	3.0	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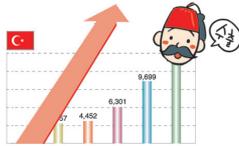
다음으로 최근 수년간 對터키 견고한 수출실적을 보이며, FTA계기로 성장이 기대되는 품목을 살펴 볼까요?



승용차, 일부 섬유사, 타이어, 윤활유 등이 추가적인 수출확대 예상 됨

### [ 한-터키 FTA 수혜 성장 품목 ]

품명	HS(터키)	관세율 (%)	철폐	품명	HS(터키)	관세율 (%)	철폐
중형승용차	87032319	10	5~7년	타이어	4011209000	4.5	3년
소형승용차	87032210	10	7년	섬유사	54025200	4.0	5년
냉연강판	7219341000	2.0	즉시	자동차부품	8708951000	3.0	7년
합성수지	3906909000	6.5	즉시	석유제품	2710199900	3.7	즉시
섬유사	54024700	4.0	5년	화학원료	2837110000	5.5	즉시
에어컨부품	84159000	2.7	3년				



對터키 가파른 수출실적을 보이며 FTA로 유리한 조건을 마련 경쟁국을 추격 또는 격차를 벌릴 수 있는 품목을 볼까요?



아미노 수지, 냉장고, 짐프사, 광학렌즈, 앞담배, 안경등이 관세혜택을 이용하여 수출확대의 발판을 마련 됨.

### [ 한-터키 FTA 수혜 유망 품목 ]

품명	HS(터키)	관세율 (%)	철폐	품명	HS(터키)	관세율 (%)	철폐
합성수지	3909300000	6.5	즉시	광학렌즈	90019000	2.9	즉시
냉장고	8418102000	1.9	5년	앞담배	2401209500	25	10년
내연기관	8407341000	2.7	3년	안경	9004901000	2.9	즉시
짐프사	5606009100	5.3	5년				



### III

## 한-터키 FTA 100% 활용하기

### 1. 한-터키 FTA 원산지신고서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 설명

-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영어로 타자·스탬프 또는 인쇄하여 작성하며, 수기로 작성시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전자서명 포함)로 작성되어야 함
- 원산지와 비원산지제품이 혼재된 경우 각 제품의 원산지표기란에 원산지와 비원산지가 구분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기

## 2. 한-터키 FTA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① preferential origin.

.....②

(Place and date)

.....③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① 란 : '제품의 원산지를 작성 (예 : KR, KOREA, TR, TURKEY)
- ② 란 : '원산지신고서 작성장소와 작성일자' 를 작성
  - ※ 해당 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작성생략 가능  
(해당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경우에는 작성해야 함)
- ③ 란 : '수출자의 서명과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 이 명확히 기재 되어야 함

### 3. 원산지신고서 제출시 유의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 (참고) 다만, 수입신고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설명

- (유효기간)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 (제3국송장)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재발행 되는 경우에도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함
- (HS 기준) 현재 HS 2012가 시행되고 있으나, 한-터키 FTA는 'HS2007 기준'으로 협상타결(작성기준 상이)
  - (2007 적용) 원산지 결정기준(협정관세적용신청서)
  - (2012 적용) 특혜세율(수출입신고서)

\* (연계표 HS2012 ↔ HS2007) 관세청 FTA포털에서 확인 가능

#### 4.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

-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원산지기준(PSR) → '원산지 결정기준' 선택 → 국가명을 '터키' 선택 → 해당 품목(HS)의 원산지 결정기준 검색

※ 관세청에서 무료로 배포중인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원산지 판정가능

※ FTA-PASS는 (<http://www.ftapass.or.kr>)에서 회원가입후 사용 가능



FTA 일반

- FTA란?
- HOT 정보
- 공지사항
- 추진현황
- FTA협정문
- FTA관련법령

한-미 · 한-EU FTA

- 한-미, 한-EU FTA활용
- 한-미 FTA
- 한-EU FTA
- 한-미 와 한-EU FTA 비교
- 한-미 FTA 활용매뉴얼

수출활용

- 활용정보
- 국내원산지증명절차
- 세율정보
-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증명서발급
- 인증수출자제도
- 비즈니스모델

수입활용

- FTA협정 발효국 여부 확인
- 품목번호 확인
- FTA 관세혜택 확인
- 증빙서류준비
- 협정세율 적용신청
- 관련서류보관
- 물량관리
- 사전심사

원산지검증

- 원산지검증 개요
- 원산지검증 주요 체크 포인트
- 원산지검증 이후조치
- 수출물품 원산지사전 진단
- 협정관세 적용제한
- 협정관세 적용보류

고객의 소리

- FTA 민원상담
- FAQ
- 원산지확인서 발급애로 신고
- 해외통관 애로신고
- FTA 컨설팅신청

자료실

- 협정별자료
- 서식모음
- 협정별 실무가이드
- FTA 용어집
- FTA 무역통계
- FTA 경진대회 사례
- 국내외 FTA 관련사이트
- FTA 상대국 통관정보
- E-BOOK ZONE

QUICK MENU

- FTA한눈에 보기
- 협정문 DB
- 자동차산업분야 HS 가이드북
-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 물량관리
- 협정별 자료

메인 링크

- FTA 사이버 강의
- E-BOOK ZONE
- FTA-PASS
- FTA활용 애로 신고
- 해외통관 애로 신고
- 관세FTA 고객상담센터
- FTA 관련 사이트
- FTA 세율 및 원산지 기준
- 원산지증명서 발급/서식
- 세계 HS 정보시스템

## 개요

- 인력·비용 부담으로 FTA활용에 애로가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청에서 개발·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프로그램('10.9~)

## 목적

- 원산지를 판정해주고, 향후 상대국의 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

## 이용방법

- 검색포탈시스템에서 'FTA-PASS' 검색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웹서비스 이용 또는 PC용 다운로드

\* FTA-PASS 홈페이지 주소 : <http://www.ftapass.or.kr>

## 제공방식

-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PC용 프로그램 및 웹방식 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

## [ FTA-PASS 종류 ]

- PC용 :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사용자 개인 PC에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표준형, 섬유 특화형, 원산지확인서 발급형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 웹용 : 웹페이지([www.ftapass.or.kr](http://www.ftapass.or.kr))에 접속하여 서비스 이용

## 이용현황

- 이용현황('13. 4. 30 기준)
- 총 8,980개 업체 사용중(PC용 4,946개, 웹용 4,034개)

## 프로그램 평가

- FTA확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원산지관리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 중이나 판정로직, 원산지기준 등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것은 FTA-PASS가 유일
- 신뢰성, 비용 등을 고려시 FTA-PASS가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

## 5. 특혜 원산지 기준 중 부가가치 기준의 특징은 무엇 인가요?



### 설명

- 한-터키 FTA에서의 부가가치기준은 공장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허용된 역외산(비원산지) 부품 사용 비율의 상한선을 규정
- 즉,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하(예 : 공장도가격 기준의 45%)의 역외산 재료를 사용해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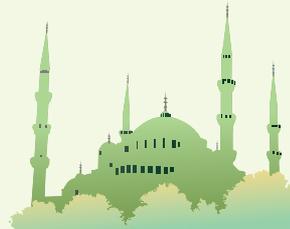


## 6. 원산지결정기준이외에도 직접운송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 설명

- 한-터키 FTA는 직접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
- 예외적으로 단일 탁송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운송시 인정
- 다만, 제3국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보존공정외의 작업은 불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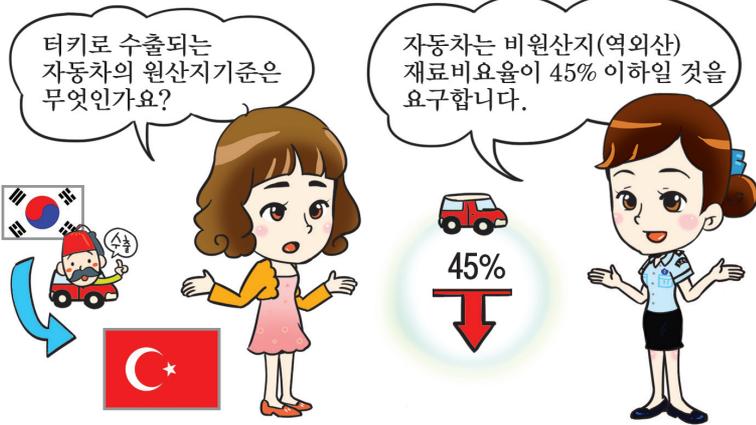
## 7. 미소기준(De Minimis)이 규정되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 설명

- 완제품이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양국이 합의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역외산 재료가 공장도가격의 10%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한 규정
- 다만, 섬유류(50~63류)에 대해서는 일반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품목마다 다른 미소기준(8~35%, 중량 및 공장도가격기준 등 다양)을 적용
- ※ 한-터키 FTA 원산지 협정문의 기타 주요 내용
  - 대체사용 가능한 재료 및 물품의 원산지 판정 특례 인정
  -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누적기준 도입
  -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가격의 15%이하인 경우 세트 전체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 제품생산에 사용되었으나 최종재에 직접 투입되지 않은 연료, 도구 등의 재료는 원산지판정시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

8.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7년 이내 22% 철폐)의 원산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살펴 보

- 완성된 자동차의 경우 역외산 부품비율이 45% 이하이고, 자동차 부품은 역외산 부품비율 50%이하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중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IV

## 한-터키 FTA의 원산지 검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 1. 특혜관세 진위 여부를 위한 검증방식은 무엇인가요?



#### 설명

- 원칙적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간접검증방식”을 도입
- 수입국 관세당국은 무작위 또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구할 수 있고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통보
- 수출국 관세당국이 10개월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2. 원칙적으로 간접검증방식이라 하였는데, 다른 방식은 없나요?



### 설명

- 간접검증을 원칙으로 하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동검증 근거를 도입함으로써 협정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
- 즉, 수입국 관련 공무원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얻고 원산지 검증에 참석할 수 있는 공동검증 방식이 가능

### 3. 수입국 관세당국은 검증요청 없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나요?



#### 설명

- 상대국에 검증요청 없이도 수입국 관세당국이 특혜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다음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직접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 ② 당초 부정당한 방법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증명서 제출
  - ③ 원산지신고서가 협정 비당사국의 수출자에 의해 발급
  - ④ 수입국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 미제출

#### 4. EU(터키) 세관의 원산지 검증 주요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 터키세관 검증 사례 미수집으로 유사한 EU 검증사례 수록)



#### 설명

##### ① 이탈리아에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등 불충족 사례

- (배경) 이탈리아 세관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신고서의 진위여부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검증요청
- (검증결과)
  - 원산지신고서 요건 충족여부 불충족
    - 담당자의 업무 미숙지로 소급발행 문구 및 날짜 미기재, 인증번호를 오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발급
  -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불가
    - 수출물품 중간공급업체의 폐업으로 원산의 제조, 가공 등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수출자가 제출하지 못함



- 원산지 증빙서류 미보관
  - 검증대상의 원사의 제조, 가공 등 거래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
- (조치사항) 해당 검증내역을 이탈리아 세관에 통보하고, 국내 법규위반에 따른 원산지조사 처분위원회 상정
  - 2천만원 이하의 벌금(다만, 과실시에는 300만원이하 벌금)

## ② 슬로바키아에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사례

- (배경) 아국 수출자가 슬로바키아로 수출한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 슬로바키아 세관측에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등 검증요청
- (검증결과) 자동차 부품(머플러) 구성품 중 'SUPPORTER' 는 역외산 원재료의 "단순 가공"으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③ 포르투갈에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신고서 불충족 사례

- (원산지 신고서 발행) 본건 원산지 신고서는 프랑스에 소재한 수출자의 해외법인이 국내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신고서를 근거로 3개로 분할 발행
-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한국산으로 인정(4단위 세번변경 충족)
- (검증결과) 본건 원산지 신고서의 수출물품은 협정에 따른 한국산 제품이 맞지만 검증대상 원산지신고서는 프랑스에 소재한 한국수출자의 해외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불충족





# V

## 알아두면 좋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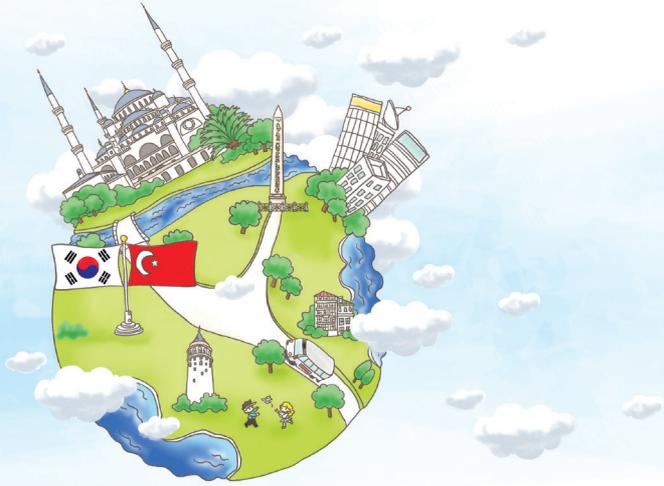
### FTA 관련 문의처

- (법령)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 044) 215-4496
- 통관
  - (제도·집행)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 042) 481-3284
  - (검증)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 042) 481-3287
  - (협력이행) 관세청 FTA협력과 ☎ 042) 481-3203
- (협상)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 02) 2110-4799

### FTA 정보제공 사이트

포털명	주소	주관기관	전문분야	종합평가
관세청 FTA포털	fta.customs.go.kr	관세청	· 한-미 FTA 활용 · 수출활용 · 수입활용 · 협정세율 및 원산지기준 · 원산지검증 · 관련서식 · FTA-PASS	· FTA활용관련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정보를 제공
FTA 종합지원포털	ftahub.go.kr www.fta.go.kr	산업부	· 정부의 FTA 추진정책 종합 · 정부의 FTA 활용정책 종합 · 정부의 FTA국내보완대책 · FTA 동영상 강좌 (FTA 이론과 실무) · 지역활용지원센터	· FTA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FTA무역종합 지원센터	okfta.kita.net	무역협회	· 원산지활용시뮬레이션 · FTA 무역통계 · FTA School · 신문고	· 무역통계· 해외 정보· 실무교육, 컨설팅 등 전문 정보제공

발행일 2013년 5월 | 발행처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실 | 편집 박병진 FTA 집행기획관, 안병욱 FTA 집행기획담당관  
시나리오 이영달, 유성우, 박노명, 정진호, 반재현, 박양희, 장현정, 고현주 | 만화 이항숙 | 인쇄처 디자인아람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